

[별지 제4호 서식]

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

사 건

수 신

참 조

제 목 고충심사 관계 자료의 제출 요구

에 근무하는 가(이) 불임과 같이 고충심사청구를 했으므로 이를 통지하는 동시에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6조의 2 제5항 및 「공무원 고충처리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아래의 자료를 요구하니 200 . . .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청구이유 각 항목에 대한 변명서 및 그 입증 관계 자료

청구 이유	변명 사유	입증 관계 자료

2. 그 밖에 이 건 소명에 필요한 관계 법규 및 자료

위 청구 관계 자료에는 증거목록이 표기되어야 하고 일련번호가 붙어야 하며, 각 청구 관계 서류 사본에 작성자의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.

불임 고충심사청구서 1통. 끝.

법제처보통고충심사위원회위원장